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고기관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57호로 2016년 6월 10일 고기관 의원 외 6명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함.

3. 주요내용

- 가. 자율방범대의 목적, 정의, 명칭 (안 제1조 ~ 제3조)
- 나.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 임무 (안 제4조, 제5조)
- 다.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 설립신고 등 (안 제6조, 제7조)
- 라.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 등 (안 제8조)
- 마. 자율방범연합대 (안 제9조)
- 바. 자율방범대의 지도 및 감독, 교육, 포상 (안 제10조 ~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 나. 예산조치: 「2016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에 의거 예산 반영됨.
- 다. 기타사항: 없 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를 조직·구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먼저,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그 사무에 관하여’란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를 의미하는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제3호1)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 제7조제7호에는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이 자원봉사활동에 포함되고, 이와 같은 자원봉사 활동을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자율방범대에 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과 자치사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또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필요경비 등의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됨.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성격, 사업의 내용,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정안의 조문 체계를 살펴보면,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명칭 등 조례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율방범대의 조직, 구성, 임무, 활동범위, 설립신고 등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 자율방범연합대, 지도 및 감독, 교육 및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